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2. 3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1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6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2(수)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(목) / 2021. 12. 29.(수) 수정안 회부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추경예산 규모

가.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07,717,384	707,717,384	545,733,305	12,416,344	51,465,113	98,102,622	- <35,762,867>
일반회계	695,665,460	695,665,460	532,501,288	12,416,344	54,124,013	96,623,815	- <35,262,867>
특별회계	12,051,924	12,051,924	13,232,017	-	-2,658,900	1,478,807	-
의료급여	655,976	655,976	503,592	-	76,544	75,84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4,400	-	347,992	-	-
주 차 장	10,753,556	10,753,556	12,434,025	-	-3,083,436	1,402,967	- <500,000>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나. 보건소 명시이월 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보조금	구비
합계 : 2개 부서 / 5건		5,878,048	2,312,232	1,024,888	1,046,240	241,104
보건의료과 (3건/987,550천원)	독산1동 복지시설 (보건지소·데이케어센터) 건립	700,000	700,000		700,000	
	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	655,094	263,550	255,550	8,000	
	보건의료서비스 제공	109,370	24,000		24,000	
건강증진과 (4건/1,324,682천원)	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	1,010,107	22,500	22,500		
	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	2,614,667	987,942	746,838		241,104
	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	674,570	200,000		200,000	
	보건소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 지원	114,240	114,240		114,240	

4. 검토의견

○ 2021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

예산 최종 규모는 7,077억 17,384천원으로

당초예산 5,457억 3,330만원과 제1회 추경 124억 1,634원,

제2회 추경 514억 6,511만원, 간주처리 981억 262만원임.
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50건 357억 6,286만원임.

이중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건 23억 1,223만 2천원임.

가.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: 3건 987,55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 (3건)		1,464,464	987,550	255,550	732,000		
1	보건의료 서비스 제공	109,370	24,000		24,00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회의(2021. 12.17)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결 과,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(`22. 집행 예정)
2	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	655,094	263,550	255,550	8,000		
3	독산 1동 복지시설 (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) 건립	700,000	700,000		700,000		[연도 내 지출불가] 실시설계 기간 연장으로 인해 `21.12월 착공 일 정이 `22. 2월로 연기됨 에 따라 공사비 이월 (`22. 상반기 집행 예정)

나.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: 4건 1,324,682천원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 (4건)		4,413,584	1,324,682	769,338	314,240	241,104	
1	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	2,614,667	987,942	746,838		241,104	[연도 내 지출 불가] 특교금 12월 교부 및 지원 인력의 재공고로 연도 내 집행 불가 (`22.1.~2. 집행예정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2	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	1,010,107	22,500	22,500			[연도 내 지출 불가] 21.12.28 특교 교부
3	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	674,570	200,000		200,00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폭증으로 12 월 발생 환자의 집행 불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협의 사항으로 예산집행 불가('22. 1. ~ 4. 집행 예정)
4	보건소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	114,240	114,240		114,24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보조금 12월 교부에 따라 연내 지출 불가 ('21. 1. ~ 4. 집행 예정)

○ 검토결과

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검토결과,
 보건의료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,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,
 독산1동 복지시설건립 총 3개 사업 987,550천원으로 사유는 실시설계
 기간 연장으로 연도내 지출 불가 등임
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, 신종감염병예방 및 대응,
 코로나 19격리환자 입원치료비, 보건소코로나대응 한시인력지원 총 4개
 사업 1,324,682천원으로 사유는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및 코로나19

확진자 폭증등 연도내 지출 불가 등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
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

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